

# '17년 간부후보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주관식)

과목	행정법	응시계급	경위	응시번호	성명
----	-----	------	----	------	----

## 1. 다음 문제에 대해 논술하시오.(50점)

A시의 'B항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A시의 환경운동위원회 회장 甲을 포함한 회원 30여명은 10여척의 어선에 승선하여 B항구 앞 해상과 지정된 항로에서 장시간 무리를 지어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상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다른 선박등의 항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자, C 해양경비안전서장 乙은 상기 행위가 현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취하였다. 乙이 수차례의 경고 방송과 3회 이상의 이동·해산 명령을 했음에도, 시위세력이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극렬히 저항하자 이에 대해 소화포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甲이 승선한 어선 D호(甲 소유)는 시위에 참가한 어선 E호와 부딪쳐 손상당하는 물적 피해를 입었다.

- 1) 乙이 행한 해상항행 보호조치의 법적 성질에 대해 논하라. (20점)
- 2) 乙이 행한 해상항행 보호조치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하라. (20점)
- 3) 만약 乙의 해상항행 보호조치가 위법한 경우, 甲의 구제수단에 대해 논하라. (10점)

## 2.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에 대해 약술하시오.(25점)

## 3. 『행정의 자동화 결정』에 대해 약술하시오.(25점)

과목	행정법	응시계급	경위	응시번호	성명	
----	-----	------	----	------	----	--

**관련법령**

**해양경비법 제14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경비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1. 선박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등의 항행 또는 입항·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
2. 선박등이 항구·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거나 항법상 정상적인 횡단방법을 일탈하여 다른 선박등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

**해양경비법 제18조(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해상검문검색 및 추적·나포 시 선박 등을 강제 정선, 차단 또는 검색하는 경우 경비세력에 부수되어 운용하는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2. 선박등에 대한 이동·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외에 정당한 직무수행 중 경비세력에 부당하게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하는 경우 경비세력의 자체 방호를 위한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5조(경찰장비·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장비: 소화포(消火砲)
2. 경찰장구: 페인트볼 및 투색총(投索銃)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제2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경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행위를 중단할 것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이동·해산·피난 명령 또는 이동·피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경고할 것
2. 이동·해산·피난 명령: 제1호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멈추지 아니하거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선박등을 이동·해산하거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에게 피난할 것을 세 번 이상 명령할 것
3. 이동·해산·피난 실행: 제2호에 따른 이동·해산·피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선박등을 이동·해산시키거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을 피난시킬 것

②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